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심재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서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스타그램 ID를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C(여, 30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6. 11. 19:3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섹스나 존나하자 암캐년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_____